

2017년 지역 공동체 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 모집 공고

평생학습의 지역사회 환원 활동으로 저변확대를 도모하는 『지역 공동체 혁신 프로젝트 : 배워서 남주자』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, 해당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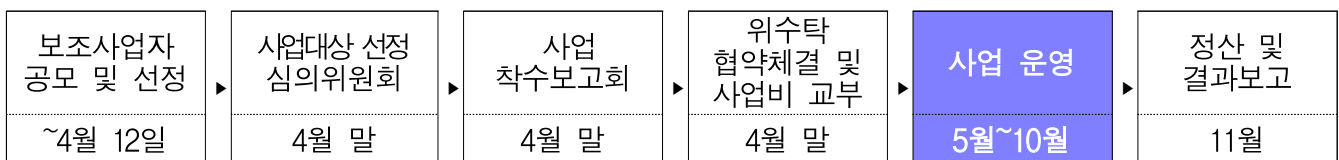
2017년 3월

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

I 공모개요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지역 공동체 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 「배워서 남주자!」
- 사업기간 : 보조사업자 선정일 ~ 10월
- 주요내용 : 평생교육 - 지역사회활동 연계 프로젝트 운영
- 운영 프로세스



2. 응모 자격

-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, (예비)사회적기업 등(지역 + 사회적기업 또는 단체 등 컨소시엄 형태도 무관)
- ※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실적 보유한 도내 기관·단체 우선 선발하며, 타 지역 이더라도, 사업대상 경기도 내 일 경우 가능

지 원 제 외 대 상

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
-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
-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
-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·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
- 보조금 횡령·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

3. 지원 규모

○ 사 업 비 : 27,500천원(1개 사업 대상마다 3,000천원 ~ 6,000천원 이내)

※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환원 활동비 포함(심사를 통해 아이디어 선별 후 차등지원)

4. 사업 기간

○ 사업수행기간 : 보조사업자 선정일 ~ 2017. 10. 31.

○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: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

○ 활동수기 제출(필수) : 2017. 11. 30

※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관련 사업 내 수기 공모하여 시상 (예정)

○ 수기공모 시상 : 경기도 평생학습 어울림 콘서트 내

5. 참고사항

- 자부담 필수는 아니나, 심사시 가점
- 편성된 사업비는 직원 및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
- 사업비 정산 및 회계 처리는 「2017년 회계운영안내 지침」을 준용하며, 선정된 기관 및 단체는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선정된 대상자는 착수보고회 필참 후 사업 진행

II 사업 지원내용

1. 공모분야

- 지역 공동체 혁신 프로젝트 운영 및 활동 :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긍정적인 변화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젝트 수행

① (유형1) 평생학습 프로그램 → 지역사회 활동

- 문화, 예술 등 다양한 영역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후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
예) 재능기부 봉사활동 (우범지역 벽화그리기등), 사회적 일자리 창출 평생학습 등

구분	대상	▶	평생 학습 활동	▶	지역환원활동
예1	사회참여를 원하는 시니어 집단		시니어 오케스트라 학습과정 운영		지역 내 소외계층 대상 공연 재능기부
예2	초등생 자녀를 둔 주부 집단		벽화그리기 학습과정 운영		내 아이 안심하고 등교하기 우범지역 벽화봉사

② (유형2) 지역사회활동 → 평생학습 프로그램

- 지역 사회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이슈에 대한 평생교육학적 접근
- 지역 내 이슈에 대한 지역 주민 수요조사, 벤치마킹 등을 통한 평생학습 과정 운영
- 학습통한 기대효과가 나타나야 함. (교육 이전 이후 인식 개선 등)

구분	대상	▶	지역사회활동	▶	평생 학습 활동
예1	지역 내 아이들 성교육에 대한 문제인식		지역 내 실태조사 및 벤치마킹		지역 내 학부모 대상 성교육 강사과정 운영
예2	미혼모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부재		프로그램 수요 조사 및 벤치마킹		미혼모 자존감 향상 교육 및 직업교육

활동 필수사항

- 지식캠퍼스(GSEEK) 내 마이플랫폼 제작 및 월별 중간점검 작성
- 학습프로그램 종료 후 지역 환원 활동 연계
- 프로젝트 종료 후 참가자 수기 제출(필수)

III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[붙임 1 참고]

1. 신청·접수

- 서류 접수기간 : 2017. 3. 29. (수) ~ 4. 13. (목) (18:00 도착분까지 유효)
 - 신청서류(양식) : 붙임 1 참고
 - 접수방법 : 방문 신청(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 불가)
 - 접수시간 : 평일 09:00 ~ 18:00까지(토, 일요일 제외)
 - 접 수 처 :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13층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
 - 문 의 : (행복배움실 ☎ 031-547-6542, saerom@gill.or.kr)

2. 제출 서류

- ① 지원신청서 5부(서식 1)
- ② 사업계획서 5부(서식 2)
- ③ 단체 소개서 5부(서식 3)
- ④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실적 5부(서식 4)
- ⑤ 2017년 단체 활동계획 및 2016년 사업 실적 5부(구체적으로 작성, 자유서식)
- ⑥ 법인등기부등본,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
민간단체(기관) 증빙서류 1부

※ 제출서류 목록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며, 번호순서대로 편철(A4종 좌철)하여 원본 제출

3.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

- 프로젝트 운영 단계별 세부 추진 계획 명시
 - 사업 방향 제시, 운영 목표 및 세부운영계획 명시
- 예산(안)은 항목별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
 - 사업비 지원항목 :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비(홍보비, 소모품성 물품구입비, 강사료, 공연비, 체험비), 기타 운영비

※ 사업비 신청항목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경비만 지원 예정

※ 사업계획서나 기타 관련 서류,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않음

※ 허위사실 기재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거 보조금 환수

IV 사업 심의 선정

1. 선정 기준

- 설립 목적 및 성격, 주요 활동사항 등 지원대상으로 적정한지 여부 검토
- 사업 수행 능력 및 전문성(유사사업 추진실적 등)
- 사업계획의 타당성, 예산편성 계획의 적절성 등

2. 심사방법

- 근거 :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「사무위탁규칙」 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)
- 심사방법 :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「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」에서 심의
 - 1차 서류심사 :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기본 자격 검토
 - 2차 심의 :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·확정

3. 심사기준 및 배점

심사항목	심사기준	배점
사업의 필요성	○ 지역 환경적·사회적 여건, 주민 요구 등 사업의 필요성	20
사업계획의 적합성	○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사업추진의 단계별 구체성 ○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○ 사업 수혜대상의 범위 및 규모	20
사업운영의 지속가능성	○ 예산확보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○ 프로젝트 이후 지속사업 가능 여부	20
사업 수행능력	○ 참여기관·단체의 책임성 및 전문성, 최근활동 실적, 전담인력의 적절성 등	10
예산 수립의 적절성	○ 예산 운영계획의 타당성 ○ 대응투자 규모	10
파급효과	○ 사업의 기대효과 및 도내 파급효과	20
총 계		100

4. 선정결과 발표

- 발표(예정)일 : 2017. 4월중
- 발표방법 : 선정단체 개별통지(미 선정단체 통보는 생략함)

5. 기타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심사 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원칙
-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,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되며, 관련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, 보조금은 환수조치 됨.

1. 사업 착수보고회 : 2017년 4월 中

- 사업대상자 최소 2인 이상 참석 필수
- 주요내용 : 사업운영 방법, 사업비 집행 및 정산시 유의사항, 지식캠퍼스 (GSEEK) 사이트 마이플랫폼 만들기 등

2. 교부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

○ 교부신청서 제출

-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수행기관은 구체적인 수정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안, 지원 단체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
- 수정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당초 계획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축소 및 확대된 경우, 또는 사업내용이 당초 지원의도에 맞지 않게 변경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원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

○ 보조금 교부 : 2017년 5월초

3. 프로젝트 수행 및 사업 점검 : ~ 2017년 10월

- 제출한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(불가피 할 경우 진흥원 결재 得)
- 월별 보고서 작성 : 매월 말일
 - 지식(GSEEK) 마이플랫폼 통해 작성 : 사업 진행내용, 사업비 집행률 등

4.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잔액 반납

○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

- 11월 15일 까지 결과보고서(양식) 및 별도 보고서(있는 경우), 출판물, 사진, 관련 기사 등 홍보물 일체를 각 1부씩 제출
- 예산지출자료(집행목록 및 증빙자료)는 사업지침에 규정한 형태로 충실히 구비하여 원본 1부를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

○ 사업비 집행 잔액 정산 및 반납

-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집행 잔액을 발생이자와 함께 반납

5. 활동수기 제출(필수) : ~ 2017. 11. 30

-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관련 사업 내 수기 공모하여 시상 (예정)

6. 수기공모 시상 : 경기도 평생학습 어울림 콘서트 내

7. 월별 프로세스

구 분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사업 기획 및 수요 파악										
사업대상자 공모 실시 및 선정										
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비 교부										
사업 운영(프로그램 운영)										
수기 공모 및 우수 수행단체 선정										
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										

8. 관련 문의

○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복배움실

- 전화 : 031) 547-6542 / 메일 : saerom@gill.gr.kr / 문의가능시간 : 10:00~18:00

[서식 1]

2017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

단 체 현 황	단 체 명		대 표 자			
	소 재 지		전화번호			
	실무담당자	직·성명	연락처 (핸드폰)			
	등록 내용		등록기관			
	등록일자 (등록번호)	. . . (번호)	회 원 수			
	주요활동실적					
신 청 현 황	신청분야	구 분 (신규·계속)	신 청 사 업 명	사 업 추 진 재 원(천원)		
				계	보조금	자부담
	계					
	유형1	신규				
※ 신청분야는 유형 1, 유형 2로 구분 기재 ① (유형1) 평생학습 프로그램 → 지역사회 활동 ② (유형2) 지역사회활동 → 평생학습 프로그램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 2017년 월 일 ○○○○ 대표 ○ ○ ○ (인)						
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※ 첨부서류 1.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(서식 2) 1부. 2. 단체소개서(서식 3) 1부. 3.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실적(서식 4) 1부. 4. 2017년 단체활동계획 및 2016년 사업 실적 1부.(구체적으로 작성, 자유 서식)						

접수번호



지역 공동체 혁신 프로젝트 사업계획서

2017. 04 .

[단체명]

2017년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

【단 체 명 :

(대표 :)】

☐ 사 업 명 :

☐ 사업목적

o

o

☐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

o 사업지역 :

o 사 업 량 : ※ 사업대상 및 인원수 등 기재

☐ 추진내용 및 방법

o

o

o

☐ 기대효과

o

o

o

작성방법

- 이번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
- 해당 지역의 환경적, 사회적 여건, 주민 및 이용자의 요구 등 사업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 기술제시
-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, 시민들에 미치는 효과 구체적으로 기재

□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

- 총사업비 : 천원(보조금 , 자부담)
 - 자부담 내역 : 회비 천원, 기부금 등 천원

○ 비목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항 목	소 요 재 원 구 분			산 출 기 초
		계	보 조 금	자 부 담	
계					
강사양성	홍보비				현수막 80천원×2개
	인건비				강사비 150천원×2회×5지역
	진행비				교재제작 5천원×500부
	진행비				교육장 대관료 600천원×2회
	활동비				
환경교육	인건비				강사비 300천원×1회
	진행비				참석자 수송버스임차 400천원×2대×2회
	진행비				교재제작 3천원×500부
	활동비				자원봉사자 식비 7천원×10명×2일
	활동비				사무용품구입 50천원×1식

※ 유의사항

-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(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)
- 자부담이 있는 경우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(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)
-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
(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)
-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. 즉, 예비비,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(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)
-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, 현금성 경비 편성불가
 -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 집기구입비,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
 - 시설비, 시설부대비, 설비비, 수선비,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
 - 이웃돕기성금, 진료비, 시상금,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
 - 차량 유지관리비(수리비, 보험료 등)
- 비용항목 구분
 - 홍보비 : 홍보물 제작비, 현수막, 책자 제작 등
 - 인건비 : 강사료, 단순인건비, 회의비 등
 - 진행비 : 장소임차료, 기자재 임차료, 행사진행비 등 기타
 - 활동비 : 교통비, 식비, 사무용품비, 각종 수수료 등

○○○단체명

주소 및 연락처	주 소	(우123-456)		
	연락처	o 전화 :	o 홈페이지 :	
		o FAX :	o E-Mail :	
설립목적	o 우리나라 ○○산업의 ○○○○와 균형있는 ○○○○을 실현하기 위한 ○○○○을 전개함으로써 ○○○○산업발전에 기여(또는 기틀 마련) 등			
단체연혁	o '81.11. 8 ○○○ 창립 o '88. 6.15 ○○○○ 사단(재단)법인 설립허가			
등록 및 인력현황	등록기관		등록일	
	대 표 자	(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)	사무국 직원수 : 명	
	회 원 수		(사무국장, 행정부장, ...)	
2016 예산현황	o 예산총액 : 천원 ※ 재원구성(100%) : 회비수입(%), 기부금 및 모금활동(%) 정부보조(%), 사업수익(%), 기타(%)			
2016 주요사업	o 주요 추진사업 2~3건 작성 o ※ 별지작성 가능 o			
2017 주요사업 계 획	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~3건 작성 o ※ 별지작성 가능 o			

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실적

연번	사 업 명	사업기간	금 액 (단위:백만원)	발 주 처 (기관명)	구 체 적 업무수행 내 용	비고
실적 건수 : 건, 실적액 : 백만원						
계						

작성시 유의사항 및 예산운영 기준

□ 작성시 유의사항

- 사업신청 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·결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

□ 예산운영(보조금 요구·처리) 기준

- 사업비 집행 기준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함.
- 정산서류는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제출
 - 보조금 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 지출액,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과 내역·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
- 정산 증빙자료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
 - 단, 인건비성 경비(원고료, 강사료 등)는 계좌이체 인정
-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건축·기계 등 시설·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신·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와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임대료, 사무용집기, 공과금 등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직성경비 및 연구용역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
- 보조사업 신청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제출함
- 보조사업비는 회계마감일까지 필히 집행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, 예금이자 반납